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가상자산사업자의 해킹·전산장애 보고의무 신설 등 〉
■ 김현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226호)

2025. 4.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현정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1. 3.
3. 회 부 일 : 2025. 1.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장애 등에 대한 보고 및 공시의무가 없으며, 보관 중인 가상자산의 우선반환 규정도 부재하여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킹·전산장애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한 우선반환청구권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7조제5항, 제9조의2 신설 및 제22조제1항제4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해킹·전산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하며,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위탁하여 보관한 가상자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반환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및 제9조의2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제7조(가상자산의 보관) ① ~ ④ (생략) <u><신 설></u>	제7조(가상자산의 보관)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위탁하여 보관한 가상자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u>
<u><신 설></u>	<u>제9조의2(사고 보고 등)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사고의 보고 및 공시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현행	개정안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u><신설></u> 5. ~ 8. (생략) ② (생략)	제22조(과태료)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u> 5.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3년 7월 제정되어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가운데, 최근 가상자산의 시장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금융정보분석원이 국내 21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실시한 2024년 상반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가능 이용자는 778만명이며, 시가총액 55.3조원, 일평균 거래규모는 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

[표1] 2024년 상반기 가상자산시장 주요현황

구분	2023년 하반기	2024년 상반기	증감(율)
1. 가상자산 거래업자			
일평균 거래규모	3.6조원	6.0조원	+2.4조원(+67%)
총영업손익	2,870억원	5,900억원	+3,030억원(+106%)
원화예치금	4.9조원	5.0조원	+0.1조원(+2.9%)
2. 가상자산 관련			
시가총액	43.6조원	55.3조원	+11.7조원(+27%)
가상자산 종목 수	1,333개	1,207개	△126개(△9.5%)
- 중복상장 제외시	600종	554종	△46종(△7.7%)
단독상장 가상자산 종목 수	332개	285개	△47개(△14%)
가격변동성 ((최고가-최저가)/최고가)	62%	70%	+8%p
3. 이용자 일반			
거래가능 이용자	645만명	778만명	+133만명(+21%)
가장 많은 이용 연령대	30대	30대	-
1백만원 미만 보유	455만명	567만명	+112만명(+24%)

주1: (조사대상) 21개 가상자산사업자(14개 거래소(거래업자), 7개 지갑·보관업자)

주2: (조사방법) 사업자가 작성·제출한 값을 기초로 집계

주3: (대상기간 및 기준시점) 2024. 1. 1. ~ 2024. 6. 30. / 2024. 6. 30.

(자료: 금융위원회, “'24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2024. 11.)

□ 그런데, 최근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례가 발생하면서 가상자산 이용자 피해 및 시장 신뢰도 저하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예를 들어, 2024년 12월 비상계엄 직후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대규모 전산장애로 인하여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으며, 2025년 2월 기준으로 두나무와 빗썸은 피해 이용자에 대해 각각 31.9억원, 6억원의 보상을 결정한 바 있음.

[표2] 2024년 비상계엄시 발생한 전산장애에 대한 민원처리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두나무		빗썸		코인원	
	건수 (비율)	보상금액 ¹⁾	건수 (비율)	보상금액 ¹⁾	건수 (비율)	보상금액 ¹⁾
정식 보상신청	1,153 (100.0)	-	248 (100.0)	-	2 (100.0)	-
보상결정	611 (53.0)	3,191	191 (77.0)	606	0	-
지급완료	590 (51.2)	3,162	187 (75.4)	602	0	-
합의중	21 (1.8)	29	4 (1.6)	4	0	-
보상제외 ²⁾	542 (47.0)	-	57 (23.0)	-	2 (100.0)	-

주1) 각 사의 보상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결정 및 확정된 금액

주2) 입증 불가, 주문기록이 없는 경우, 단순 기대이익에 대해 보상을 요구한 경우 등

(자료: 금융감독원 제출자료, 2025. 4. 24. 기준)

☐ 이처럼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 발생 우려가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해킹·전산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해킹·전산장애 발생 시 가상자산사업자의 보고 및 공시 의무를 부여하고, 가상자산 이용자의 우선반환권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상자산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 개정안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먼저 개정안 제9조의2는 해킹·전산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위원회에 대한 즉시 보고 및 사고일부터 15일 이내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의무를 부과하려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음.

○ 이러한 개정안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용자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 다만, 개정안은 “사고일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이용자의 피해 확산 방지라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에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해킹·전산장애 등의 신속한 안내를 위하여 사고 발생 시 이를 “즉시” 공시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한편, 개정안 제7조제5항은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위탁하여 보관한 가상자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반환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이용자 예치금에 대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한 경우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규정¹⁾하고 있는 반면, 가상자산 사업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예치금의 보호)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이용자의 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는 경우에는 그 예치금이 이용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예치금을 상계·압류(가압류를 포함한

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보관하는 가상자산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사업자가 보관 중인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대하여 이용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반환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전자금융거래법」, 「보험업법」 등의 법률에서는 선불충전금²⁾, 보험계약자 등의 예탁자산³⁾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명시적

다)하지 못하며, 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한 가상자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예치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관리기관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된 예치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 2. 해산·합병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선불충전금의 보호) ① 제28조제2항제3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같은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이하 “선불업자”라 한다)는 선불충전금(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하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별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신탁 2. 예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과 제2항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직접 운용하는 선불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선불충전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④ 선불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이 이용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상계 또는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선불업자는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은 선불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의 청구 방법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제43조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선불업자 등 그 사실을 알게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금융투자업자 등이 파산한 경우 투자자예탁금⁴⁾, 클라우드 펀딩 청약증거금⁵⁾,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투자금 등⁶⁾에 대하여 투자자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⑨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은 그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선불업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선불충전금을 제1항에 따라 다른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시 별도관리하여야 한다.

⑩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한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제7항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 3. (생략)

⑪ 선불충전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이용자, 그 청구권의 양수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으로 별도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⑫·⑬ (생략)

3) 「보험업법」

제33조(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① 보험계약자나 보험금을 취득할 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주식회사가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예탁한 자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을 준용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預置)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예치기관”이라 한다)에게 투자자예탁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자예탁금이 투자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상계(相計)·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투자자예탁금을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예치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예치기관은 예치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투자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예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투자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인가가 취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융투자업 전부 양도가 승인된 경우

5.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융투자업 전부 폐지가 승인된 경우

6.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융투자업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⑥ ~ ⑬ (생략)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8(청약증거금의 관리) ① (생략)

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금융소비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

[표3] 금융소비자 등의 권리 보호 관련 입법례

법률	보호대상	입법방식
전자금융거래법	선불충전금	- 우선변제권 부여 - 선불업자 파산 시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의 선불충전금 우선지급 의무 부여
보험업법	예탁자산	- 우선변제권 부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투자자예탁금	- 금융투자업자 파산 시 예치기관의 우선지급 의무 부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투자금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파산 시 예치된 투자금 등의 우선지급조치 의무 부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용자 예치금	- 가상자산사업자 파산 시 예치기관의 우선지급 의무 부여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은행(이하 이 조에서 “은행”이라 한다)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제2항에 따라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이 투자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상계·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등록취소, 해산결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이 투자자에게 우선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청약증거금의 예치 또는 신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등록취소, 해산결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이 투자자에게 우선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투자금 및 상환금의 관리)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금 및 상환금(이하 “투자금 등”이라 한다)을 고유재산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제1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한 자금과 구분하여 자금보관 및 관리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투자금등이 투자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등을 상계·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등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등록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등이 투자자에게 우선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다만, 이용자의 “우선반환권”을 인정하는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첫째, 개정안은 “우선반환권”을 인정함으로써 이용자 권리를 높은 수준에서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해킹 등 전산사고로 가상자산이 소실되는 경우 해당 가상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앞에서 소개한 입법례에 따르면, 우선변제권 또는 우선지급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보호하려는 자산은 은행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하여 사업자 고유재산과 금융소비자 등의 재산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반면, 가상자산의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해당 자산을 스스로 보관하므로 고유재산과 이용자 재산의 분리·식별이 상대적으로 객관적이지 아니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채권자의 재산권을 제약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종합하면,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내실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유사한 취지의 개정안과 함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4] 이용자 가상자산 보호를 위한 개정안 발의 현황

의안번호	대표발의	제안일자	주요내용
2204351	박상혁의원	2024. 9. 26.	-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하는 가상자산의 상계·압류 금지
2207226	김현정의원	2025. 1. 3.	- 해킹·전산장애 발생 시 보고·공시의무 부과 -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의 우선반환청구권 규정
2208717	이헌승의원	2025. 3. 7.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 부과
2209244	이헌승의원	2025. 3. 21.	-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종료 시 가상자산 출금 허용 - 미반환 가상자산 등은 금융위원회 지정기관에 이전하여 보관
2209816	강훈식의원	2025. 4. 15.	- 가상자산시장의 운영 종료에 대한 업무지침 공시 - 가상자산시장 운영 종료 시 사전통지 의무 부과 - 금융위원회의 이용자 자산 이전 및 반환 조치 마련 의무 부과
2209862	민병덕의원	2025. 4. 16.	- 이용자의 가상자산이 일반 파산재단에 편입되지 않도록 규정
2209897	강훈식의원	2025. 4. 17.	- 전산사고로 인해 이용자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 부과

-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다른 입법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우선변제권”이 아닌 “우선반환권”이 법 체계상 타당한지 먼저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 보호방안은 해외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 영업행위 규율방안(제3자 보관 여부) 등 추가제도 개선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1